

# 2025년 희망저축계좌 II 사업 안내문

## 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-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- 근로소득장려금: 10만원(1년차), 20만원(2년차), 30만원(3년차) 매칭하여 지원\*
- \*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

### ◆ 지원예시

-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⇒ **3년간 약 720만원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\***
- \*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  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  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
## □ 가입 및 유지 기준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
(단위: 원/월)

| 구 분              | 1인 가구     | 2인 가구     | 3인 가구     | 4인 가구     | 5인 가구     | 6인 가구     | 7인 가구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기준 중위소득         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| 가입기준<br>(소득상한)*  | 1,196,007 | 1,99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 4,494,214 |
| 유지기준<br>(소득상한)** | 5,025,353 | 5,025,353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
\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
\*\* 유지기준: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## □ 해지요건

| 구 분  |    | 해지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급해지 | 만기 | 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중도 | - 가구의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초과<br>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<br>-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 해지 요청 시<br>→ <b>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*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</b><br>* (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) 가입 1년 이내: 총 4시간 / 1년 이상~2년 이내: 총 7시간 / 2년 이상: 총 10시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환수해지 | 만기 | -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<br>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본인적립금과 이자<br>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 |
|      | 중도 | -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<br>-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<br>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<br>- 압류, 가압류 시<br>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<br>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<br>- 생계·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<br>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유의사항

### ○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\*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\*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[참고]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월 | '24.12.24(화)~'25.1.22(수) | 7월  | 6.24(화)~7.22(화)   |
| 2월 | 1.23(목)~2.24(월)          | 8월  | 7.23(수)~8.22(금)   |
| 3월 | 2.25(화)~3.24(월)          | 9월  | 8.23(토)~9.22(월)   |
| 4월 | 3.25(화)~4.22(화)          | 10월 | 9.23(화)~10.22(수)  |
| 5월 | 4.23(수)~5.22(목)          | 11월 | 10.23(목)~11.24(월) |
| 6월 | 5.23(금)~6.23(월)          | 12월 | 11.25(화)~12.22(월) |

### ○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

-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·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 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자립역량교육 이수(필수)

-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(중도지급 시에도 가입 기간별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 이수 필요)
- 온라인 교육처 : 자산형성포털(<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>),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 (<https://lms.welfareinfo.or.kr>)

### ○ 기타 참고사항

-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수원시 복지정책과와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◆ 희망저축계좌Ⅱ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

- 우만지역자활센터(☎ 031-231-9208)
- 수원지역자활센터(☎ 031-890-0194)
- 희망지역자활센터(☎ 031-257-3991)
- 수원시청 복지정책과(☎ 031-228-2486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)

- 자산형성포털(<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>) 회원 가입하여 본인 저축 현황 및 정부 지원금 적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본인 또는 가구원의 중복가입 이력 등 해지 사유가 확인되면 환수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# 2025년 희망저축계좌 II 모집일정

| 차수             | 신규모집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대상자 등록<br>(소득조사 접수)    | 지원대상자 선정<br>(소득재산 조사 :<br>통합조사관리팀) | 가입대상자 선정,<br>결정처리 및 전송   | 통장 개설 및<br>본인적립금 입금      | 지원금 계좌 생성                  | 근로소득장려금<br>적립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행주체<br>(등록방법) | 신청자/읍면동<br>(행복e음)        | 시군구<br>(행복e음)            | 시군구<br>(행복e음)                      | 시군구<br>(행복e음)            | 가입자<br>(하나은행)            | 한국자활<br>복지개발원<br>(자활정보시스템) | 한국자활<br>복지개발원<br>(자활정보시스템) |
| 1차(4월)         | 4. 1.(화)~<br>4. 22.(화)   | 4. 1.(화)~<br>4. 25.(금)   | 4. 1.(화)~<br>5. 30.(금)             | 6. 2.(월)~<br>6. 13.(금)   | 6. 2.(월)~<br>6. 23.(월)   | 6. 24.(화)~<br>6. 25.(수)    | 6. 26.(목)~<br>6. 30.(월)    |
| 2차(7월)         | 7. 1.(화)~<br>7. 22.(화)   | 7. 1.(화)~<br>7. 25.(금)   | 7. 1.(화)~<br>8. 29.(금)             | 9. 1.(월)~<br>9. 12.(금)   | 9. 1.(월)~<br>9. 22.(월)   | 9. 23.(화)~<br>9. 24.(수)    | 9. 25.(목)~<br>9. 30.(화)    |
| 3차(10월)        | 10. 1.(수)~<br>10. 24.(금) | 10. 1.(수)~<br>10. 29.(수) | 10. 1.(수)~<br>11. 28.(금)           | 12. 1.(월)~<br>12. 12.(금) | 12. 1.(월)~<br>12. 22.(월) | 12. 23.(화)                 | 12. 24.(수)~<br>12. 26.(금)  |